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793호

반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92호(2023.9.7.)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된 특별계획구역9(반도아파트)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반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4/FAX 2199-5690)에 ‘서면’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 (열람공고 주민의견 제출, <https://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용 산 구 청 장

Ⅰ. 공람기간 : 2026. 05. 27. ~ 2026. 06. 29. (30일 이상)

Ⅱ. 공람장소 : 용산구청 7층 주택과, 반도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용산구 이촌동 301-170번지, 반도아파트 1동]

Ⅲ.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청 주택과 (☎02-2199-7364/FAX 2199-569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https://urban.seoul.go.kr>)

※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방문 제출은 2026. 06. 29. 18:00 이전 개별 접수분에 한함.

Ⅳ. 관련도면 및 결정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 첨부된 정비구역 도면 등 세부관계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비계획(안)은 신속통합기획 자문,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된 내용 외의 사항은 열람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반도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1.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반도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이촌동 301-170 알대	16,508.1	감) 139.1	16,369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9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칭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508.1	-	16,369.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559.8		12.0	0.1	-
	소공원	559.8	감) 559.8	-	0	공원 폐지
	도로	-	증) 12.0	12.0	0.1	-
확지	소 계	15,948.3	감) 408.7	16,357.0	99.9	-
	공동주택	15,948.3	감) 408.7	16,357.0	99.9	-

※ 기정 토지이용계획 면적은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23.9.7.) 결정 사항을 반영

3. 용도지역 지구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508.1	감) 139.1	16,369.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6,508.1	감) 139.1	16,369.0	100.0	

주) 금강아산병원 제척에 따른 면적 조정(용도지역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원	16,369	-	건설부고시 제1976-131호	반도 아파트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a)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추정비례율 산정 : 88.47% = (909,951,000,000 - 316,509,000,000) / 670,800,000,000 × 100% = 88.47% - 총 수입 추정 : 909,951,000,000원 - 총 지출 추정 : 316,509,000,000원 - 종전자산 총액 추정 : 670,800,000,000원																																															
유형별 종전자산 추정액 (b)	아파트 종전자산 = 부동산 시세조회 사이트(KB부동산, 부동산뱅크, 한국부동산원, 2026년4월기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시세 및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 <table><tr><th>전용면적 (㎡)</th><th>공급면적 (㎡)</th><th>세대수</th><th>KB부동산 평균가(천원)</th><th>한국부동산원 평균가(천원)</th><th>부동산뱅크 평균가(천원)</th><th>최근1년 최고실거래가 (천원)</th><th>추정액 (천원)</th></tr><tr><td>136.21</td><td>136.21</td><td>108</td><td>3,400,000</td><td>3,300,000</td><td>3,350,000</td><td>3,500,000</td><td>3,400,000</td></tr><tr><td>166.34</td><td>166.34</td><td>12</td><td>-</td><td>-</td><td>3,512,500</td><td>-</td><td>3,500,000</td></tr><tr><td>167.18</td><td>167.18</td><td>24</td><td>3,500,000</td><td>3,475,000</td><td>3,512,500</td><td>3,650,000</td><td>3,500,000</td></tr><tr><td>197.46</td><td>197.46</td><td>48</td><td>3,700,000</td><td>3,925,000</td><td>3,725,000</td><td>3,700,000</td><td>3,700,000</td></tr></table> ※ 종전자산은 향후 실제 감정평가 시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KB부동산 평균가(천원)	한국부동산원 평균가(천원)	부동산뱅크 평균가(천원)	최근1년 최고실거래가 (천원)	추정액 (천원)	136.21	136.21	108	3,400,000	3,300,000	3,350,000	3,500,000	3,400,000	166.34	166.34	12	-	-	3,512,500	-	3,500,000	167.18	167.18	24	3,500,000	3,475,000	3,512,500	3,650,000	3,500,000	197.46	197.46	48	3,700,000	3,925,000	3,725,000	3,700,000	3,700,000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KB부동산 평균가(천원)	한국부동산원 평균가(천원)	부동산뱅크 평균가(천원)	최근1년 최고실거래가 (천원)	추정액 (천원)																																									
136.21	136.21	108	3,400,000	3,300,000	3,350,000	3,500,000	3,400,000																																									
166.34	166.34	12	-	-	3,512,500	-	3,500,000																																									
167.18	167.18	24	3,500,000	3,475,000	3,512,500	3,650,000	3,500,000																																									
197.46	197.46	48	3,700,000	3,925,000	3,725,000	3,700,000	3,700,000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① 추정 권리가액[추정비례율(a)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b)] - ② 관리자 분양가 추정액 = ③ 추정분담금 <table><tr><th>① 추정 권리가액</th><th colspan="2">② 관리자 분양가 추정액 (천원)</th><th>③ 추정분담금</th></tr><tr><td rowspan="4">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88.47%)</td><td>전용 103.55㎡형</td><td>3,935,000</td><td rowspan="4">추정 권리가액 - 관리자분양가 추정액 (+ : 부담 / - : 환급)</td></tr><tr><td>전용 129.00㎡형</td><td>4,250,000</td></tr><tr><td>전용 129.55㎡형</td><td>4,253,000</td></tr><tr><td>전용 153.00㎡형</td><td>4,552,000</td></tr></table>								① 추정 권리가액	② 관리자 분양가 추정액 (천원)		③ 추정분담금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88.47%)	전용 103.55㎡형	3,935,000	추정 권리가액 - 관리자분양가 추정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129.00㎡형	4,250,000	전용 129.55㎡형	4,253,000	전용 153.00㎡형	4,552,000																										
① 추정 권리가액	② 관리자 분양가 추정액 (천원)		③ 추정분담금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88.47%)	전용 103.55㎡형	3,935,000	추정 권리가액 - 관리자분양가 추정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129.00㎡형	4,250,000																																														
	전용 129.55㎡형	4,253,000																																														
	전용 153.00㎡형	4,552,000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가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⑧	소공원	소공원	이촌동 301-170	559.8 (408.7)	감) 559.8	-	서고제98호 (06.03.23)	-

주) ()는 구역내 면적임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⑧	소공원	공원 폐지	금강아산병원 부지 제척 및 주변 공원현황을 고려한 소공원 폐지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복리 시설	주민 공동 시설	획지1	경로당	150~300세대 미만 : 99㎡이상
			어린이집	-
			작은도서관	-
			다함께돌봄센터	-
			주민카페 및 라운지	-
			어린이놀이터	-
			주민공동시설	-
			소계	843.7㎡이상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90	10㎡+(세대수-50)×0.05㎡이상 : 21.0㎡이상
	경비시설		80	

주) 향후 사업승인시 시설 설치면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반도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6,369.0	획지1	16,357.0	이촌동 301-170번지 알대	2	-	-	2	-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 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상한	법적 상한																						
변경	반도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6,369.0	획지1	16,357.0	이촌동 301-170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51.29 이하 (정비 계획)	-	200m 이하 (58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주택공급계획 : 276세대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table><tr><th>구분</th><th>세대수(세대)</th><th>비율(%)</th><th>비고</th></tr><tr><td>계</td><td>276</td><td>100.0</td><td>-</td></tr><tr><td>60㎡이하</td><td>43</td><td>15.6</td><td>공공주택 28세대 포함</td></tr><tr><td>60~85㎡이하</td><td>41</td><td>14.9</td><td>공공주택 27세대 포함</td></tr><tr><td>85㎡초과</td><td>192</td><td>69.5</td><td>-</td></tr></table>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를 적용 제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6호, 2024.1.19.) :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종전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클 것 :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계	276	100.0	-	60㎡이하	43	15.6	공공주택 28세대 포함	60~85㎡이하	41	14.9	공공주택 27세대 포함	85㎡초과	192	69.5	-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계	276	100.0	-																														
60㎡이하	43	15.6	공공주택 28세대 포함																														
60~85㎡이하	41	14.9	공공주택 27세대 포함																														
85㎡초과	192	69.5	-																														
심의안화 사항 허용용적률 10% 의무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지정 - 강변북로변, 광역통경축변(동작대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 북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벽면한계선 지정 - 광역통경축변(동작대로) : 15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3m 후퇴																																	
기타사항 수변특화 주동 배치구간 한강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0m - 한강변 첫주동 중저층(20층) 주동을 배치하여 수변 주거지역의 변화감 있는 수변경관 형성이 유도되도록 계획 보도형전면공지 한강변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연결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보도형전면공지(폭 10m) 조성																																	

주)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 될 수 있음

2)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획지면적 (주택용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토지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16,369.0 ㎡	16,357.0 ㎡	2,942.1㎡	2,256.7㎡ (정비기반시설 등 12.0, 공공임대주택 지분 2,244.7)	685.4㎡ (공공임대주택 685.4)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면적 : 2,942.1㎡ (17.97%) = 신설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 2,256.7㎡ + 685.4㎡ - 0㎡ - 0㎡ = 2,942.1㎡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 10% 내외 원칙으로 유연하게 운영 2006년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12층)→제3종일반주거)된 주택용지는 공공기여 10%별도 이행							
공공시설설치 면적 (토지)	정비기반시설 = 도로 12.0㎡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 전체건축물 연면적 × 획지면적 - 지상 : 5,603.05㎡ ÷ 70,606.0㎡ × 16,357.0㎡ = 1,298.04㎡ - 지하 : 4,086.19㎡ ÷ 70,606.0㎡ × 16,357.0 = 946.63㎡ - 대지지분 : 1,298.5㎡ + 946.63㎡ = 2,244.7㎡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 (건축물)	임대 주택	환산부지면적 = 표준건축비(원/㎡) ×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 부지가액(공시지가×2) - 지상 24평형 : (2,249,091원/㎡ × 2,434.6㎡) ÷ (11,941,000원/㎡ × 2) = 229.28㎡ - 지상 34평형 : (2,082,727원/㎡ × 3,168.45㎡) ÷ (11,941,000원/㎡ × 2) = 276.31㎡ - 지하 : (1,050,909원/㎡ × 4,086.29㎡) ÷ (11,941,000원/㎡ × 2) = 179.8㎡ - 환산부지면적 : 229.28㎡ + 276.31㎡ + 179.8㎡ = 685.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국토부고시 제2025-501호) 적용(부가세 제외)	
		표준 건축비	지상		지하			
24평 형	2,249,091원/㎡		1,050,909원/㎡					
34평 형	2,082,727원/㎡							
임대주택 연면적	24평 형	2,434.6㎡	1,726.79㎡	부지 가액	23,882,000원 (구역내 공시지가(11,941,000원/㎡) × 2 , 2025.01기준)			
	34평 형	3,168.45㎡	2,359.50㎡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 ※ 허용용적률 10% 의무사항 이행 : 친환경 건축물 5%, 방재안전 5%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200×(2,942.1㎡/16,369.0㎡)×1 =17.97%							

구분	산정내용	
정비계획 용적률 (상한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text{기준용적률} \times (1 + (1.3 \times \alpha_{\text{토지}} \times \text{가중치}) + (1.0 \times \alpha_{\text{건축물}}))$ $= 200 \times (1 + (1.3 \times 0.1599 \times 1) + (1.0 \times 0.0486))$ $= 251.29\%$	α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 면적 $\alpha_{\text{토지}}$: 0.1599 $= 2,256.7 / 14,112.3$ $\alpha_{\text{건축물}}$: 0.0486 $= 685.4 / 14,112.3$

■ 허용용적률 의무사항

구분		적용기준	대상지 결과값	적용 적용값
보행 중심 생활 공간 조성	공공보행통 로 (보차혼용통 로 및 입체결정한 도로 포함)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설정)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 α=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 수변친화 중복적용 불가 $200\% \times (1,282.27\text{m}^2/16,357.0\text{m}^2) \times 1 = 15.68\%$	10%op 이내	-
	열린단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조성 (지형도면고시)	5%op	-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개 선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4%, 일반등급 3%	5%op 이내	-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x α ※ α=0.1이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op 이내	-
	고령 서비스 시설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x α ※ α=0.1이하 * 노인복지시설 등	5%op 이내	-
	층간소음해 소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1등급 5%, 2등급 3%	5%op 이내	-
환경친화안 전한 주거지 조성	친환경 건축물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 ZEB1 7.5%, ZEB2 7%, ZEB3 6.5%, ZEB4 6%, ZEB5 5.5% ②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 등급 3%, 우수 등급 1.5% ※ 친환경 항목 및 인센티브량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 변경 시 연동 ※ ①, ② 중복적용 가능. 단, 동일 세부항목은 상한/허용에 동시적용 불가 ※ 법률·정책상 의무화시 미적용	7.5%op 이내	5.5% (적용 5%)
	우수디자인 +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 및 장수명주택 인증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우수디자인 및 장수명주택 인증(최우수 15%, 우수등급 10%)	15%op 이내	-
	수변친화공 간조성	수변공간과 적극적 연계를 통한 수변친화 생활환경 조성 - 수변 접근성을 고려한 보행로 조성, 조망축 및 통경축 확보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op 이내	-
	방재안전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시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등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5%op 이내	5.0%
기타	역사문화보 전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
	지역특화	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간재구조 및 미래전략시설 등(위원회에서 인정시)	5%op 이내	-
합 계		총 20%op이상 선택적 이행		10%op

주) 2006년 용도지역 상향된 특별계획구역9(반도아파트)의 경우,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 (2022.11.)」에 따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3.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준용하여 허용용적률 완화범위 1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사항을 준수

9.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동측 진출입로 차로운영계획 수립 - 차량 진출입구 북측 구간 : 2차로(양방통행) - 차량 진출입구 남측 구간 : 1차로(일방통행)
진출입 동선		◦ 사업지 차량 진출입구 회전반경 확보(R=6.0m)
보행	㉡	◦ 사업지 북동측 교차로 및 사업지 진출입구 횡단보도 설치(2개소)
	-	◦ 사업지 차량 진출입구 횡단보도 설치(1개소)
자전거	-	◦ 사업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대수(438대)의 20% 이상 설치
주차	-	◦ 계획주차대수 : 690대 - 법정주차대수(438대)의 157.5% 확보 - 장애인전용 주차면 확보 : 법정주차대수의 3% 이상 - 확장형 주차면 확보 : 계획주차대수의 30% 이상 - 경형 주차면 확보 : 계획주차대수의 10% 이하 - 가족배려 주차면 확보 : 계획주차대수의 10% 이상 -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면 확보 : 계획주차대수의 5% 이상(충전시설 포함)
교통안전 및 기타	-	◦ 주차장 내 반사경 및 차량경고등 설치
	-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신설되는 보도, 횡단보도 등의 교통시설의 실시 설계시 점자유도블럭 등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계획 반영

주) 각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1)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 경 보 전	토양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최대한 틈새투수포장 활용 조경계획 수립시 다층구조의 식생대를 조성하여 조류를 유인하고, 소규모 비오터를 조성하여 새로운 녹지축을 형성 단지 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장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조경녹지 및 가로변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정화능력 및 적응력이 우수한 환경정화 수종을 우선 식재토록 계획 차음성능이 우수한 창호 사용 등을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
재 난 방 지	사업대상지내 전면공지 등은 우수침투가 가능한 투수성 바닥포장을 사용하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이용 지구내 자연지반을 최대한하고 표면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침투율이 높은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공사는 원칙적으로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유실 방지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 시행	-

2)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자연 환경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 평가 2등급 개별비오톱평가 : 제외지역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유기적인 생태네트워크 구성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식생보전등급 V 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적절한 조경계획을 수립
생활 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조사	상위계획 실현 및 지역발전, 공공성 확보 및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오염 발생하지않음	-
	지형·지질	지형·지질영향 최소화	○	지형·지질 변동 발생하지않음	-
	물순환	생태면적률 30%	○	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생태면적률 30.09%로 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수질	수질오염 최소화	○	수질상태확인 처리시설 현황 파악	수질오염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	
기상 및 미기후	기상변화 최소화	○	기상변화 발생하지 않음	-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대기질 현황 및 영향예측	대기오염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발생 폐기물량 예측	폐기물 처리대책 마련	
에너지 및 온실가스	에너지효율 관리방안 수립 및 온실가스 저감	○	전력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조성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시 소음·진동 예측	저감방안 수립으로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경관	스카이라인 보전 및 조망권 확보	○	주요건축물 등으로 차폐 및 스카이라인이 조화되어 경관상 영향 적음	대상지 주변과 비슷한 볼륨의 건축계획 수립	
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주변에 휴식 및 여가공간은 풍부하지만 활동적인 오픈스페이스 부족	주변에 위치한 오목공원과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조피해가 발생함.	건축법 및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건축물간 적정이격거리 유지하고, 복층 공동주택 일조 영향 최소화를 위해 건축배치는 최대한 이격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확보	○	보행자전용도로 검토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수립	
사회 경제 환경	인구	-	○	수용인구에 따른 영향예측	계획 수용인구 예측

11.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재건축사업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이촌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현황 : 192세대 계획 : 276세대 증) 84세대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교육환경 보호	계획시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교통영향분석시 스쿨존 계획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													
	공사시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th><th>주간 (07:00~18:00)</th><th>야간 (22:00~05:00)</th></tr></thead><tbody><tr><td>주거지역내 공사장</td><td>60dB(A) 이하</td><td>65dB(A) 이하</td><td>50dB(A) 이하</td></tr></tbody></table> 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비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함 - 생활진동 규제기준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주간(06:00~22:00)</th><th>심야(22:00~06:00)</th></tr></thead><tbody><tr><td>주거지역</td><td>65dB(V) 이하</td><td>60dB(V) 이하</td></tr></tbody></table> 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 소음·진동 발생 저감대책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관리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 전달경로에서의 방지대책 공사시 방음벽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 저감 효과를 높임 -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향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 저감 효과를 높임	구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내 공사장	60dB(A) 이하	65dB(A) 이하	50dB(A) 이하	구분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주거지역	65dB(V) 이하	60dB(V) 이하
구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내 공사장	60dB(A) 이하	65dB(A) 이하	50dB(A) 이하													
구분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주거지역	65dB(V) 이하	60dB(V) 이하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공동주택 주·부출입구	단지 출입구 보행동선에 CCTV 설치 자연감사가 낮고 활동인자의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경우 경비실 또는 CCTV 설치 단지 출입구에 출입차단기를 설치하여 차량 출입 통제 출입구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

Ⅵ.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858,098.6 (16,369.0)	-	858,098.6 (16,369.0)	-	-

2.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58,098.60	-	858,098.60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5,488.80	-	75,488.80	8.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2,288.40	-	42,288.40	5	-
	제3종일반주거지역	737,524.40	-	737,524.40	85.9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797.00	-	2,797.00	0.3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원	16,369	-	건설부고시 제1976-131호	반도 아파트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⑧	소공원	소공원	이촌동 301-170	559.8 (408.7)	감) 559.8	-	서고제98호 (06.03.23)	-

주) ()는 구역내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⑧	소공원	• 공원 폐지	• 금강아산병원 부지 제척 및 주변 공원현황을 고려한 소공원 폐지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구분	도면번호	면적(㎡)	위치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⑨	16,508.1	이촌동 300-5	반도APT 일대
			이촌동 301-165(일부)	
			이촌동 301-170	
변경	특별계획구역 ⑨	16,369.0	이촌동 300-5	반도APT 일대
			이촌동 301-170	

- 특별계획구역 9 (반도APT) : 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특별계획구역 ⑨	특별계획구역 ⑨ 면적 감소 - 16,508.1㎡ → 16,369.0㎡ (감 139.1㎡)	기결정 소공원 폐지 및 금강아산병원 부지 제척으로 인한 구역계 변경

5.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8. 건축물 배치·형태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9. 특별계획구역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사항에 한함)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 9	서빙고동 301-170번지 일원	16,508.1	감) 139.1	16,369.0	반도 아파트 일대

특별계획구역9(반도아파트) 개발지침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안)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170번지 일원		-
면적		16,508.1㎡	16,369.0㎡	
용도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기여율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 10% 내외 원칙 2006년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12층)→제3종일반주거)된 주택용지는 공공기여 10% 별도 이행		-
공공시설 등 계획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확보	도로 : 12.0㎡(가각 확보) 소공원 폐지	지침도에 따름
용도 계획	허용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밀도 계획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 200% 이하 -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허용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상한용적률 : 300% 이하		-
	높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름 - 기본계획 변경시 변경된 기준 적용	200m이하(58층 이하)	-
건축선	건축한계선	강변북로변, 광역통경축변(동작대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북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지침도에 따름
	벽면한계선	광역통경축변(동작대로) - 1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3m 후퇴 (11층 이상부터 적용)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대상지 남측 한강변 경계부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10m)	지침도에 따름
	공공보행 통로	한강변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연결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폭 10m) 조성(24시간 개방)	한강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보도형 전면공지(10m) 조성	-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수변특화 주동 배치구간	한강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0m - 한강변에 중저층형(15~20층) 주동을 배치하여 수변 주거지역의 변화감 있는 수변경관 형성이 유도되도록 계획		지침도에 따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안)	
건축 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거지로서의 차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상1층 ~ 지상3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루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 단지내 차량동선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
기타에 관한 사항		• 세부개발계획 수립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		-

특별계획구역9(반도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170번지 일원	-												
면적		16,369.0㎡	-												
용도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기여율		순부담율 17.97% 계획	-												
공공시설 등 계획		도로 : 12.0㎡(가각 확보)	지침도에 따름												
용도 계획	허용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밀도 계획	건폐율	50% 이하 (19.87%)	-												
	용적률	기준(허용)용적률 : 200% 이하 - 허용용적률 의무 사항(10%) 적용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table><tr><th>구분</th><th>적용기준</th><th>계획값</th></tr><tr><td>친환경건축물</td><td>ZEB 5등급</td><td>5.5%</td></tr><tr><td>방재안전</td><td>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저류조, 저류시설 설치</td><td>5.0%</td></tr><tr><td>합 계</td><td colspan="2">적용 10%(10.5%계획)</td></tr></table> 상한(정비계획) 용적률 : 251.29% 이하	구분	적용기준	계획값	친환경건축물	ZEB 5등급	5.5%	방재안전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저류조, 저류시설 설치	5.0%	합 계	적용 10%(10.5%계획)		-
	구분	적용기준	계획값												
	친환경건축물	ZEB 5등급	5.5%												
방재안전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저류조, 저류시설 설치	5.0%													
합 계	적용 10%(10.5%계획)														
높이	200m이하(58층 이하)	-													
건축선	건축 한계선	강변북로변, 광역통경축변(동작대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보도형전면공지 조성) 북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지침도에 따름												
	벽면 한계선	광역통경축변(동작대로) - 건축물의 경우 벽면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3m이상 후퇴													
대지내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대상지 남측 한강변 경계부 및 서측 광역통경축변 보도형전면공지 조성(10m)	지침도에 따름												
	공공보행 통로	-	-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수변특화 주동 배치구간	한강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0m - 협소한 부지 여건을 고려하여 한강변 첫주동 중저층(20층 이하) 주동을 배치하고, 수변 주거지역의 변화감 있는 수변경관 형성이 유도되도록 계획	지침도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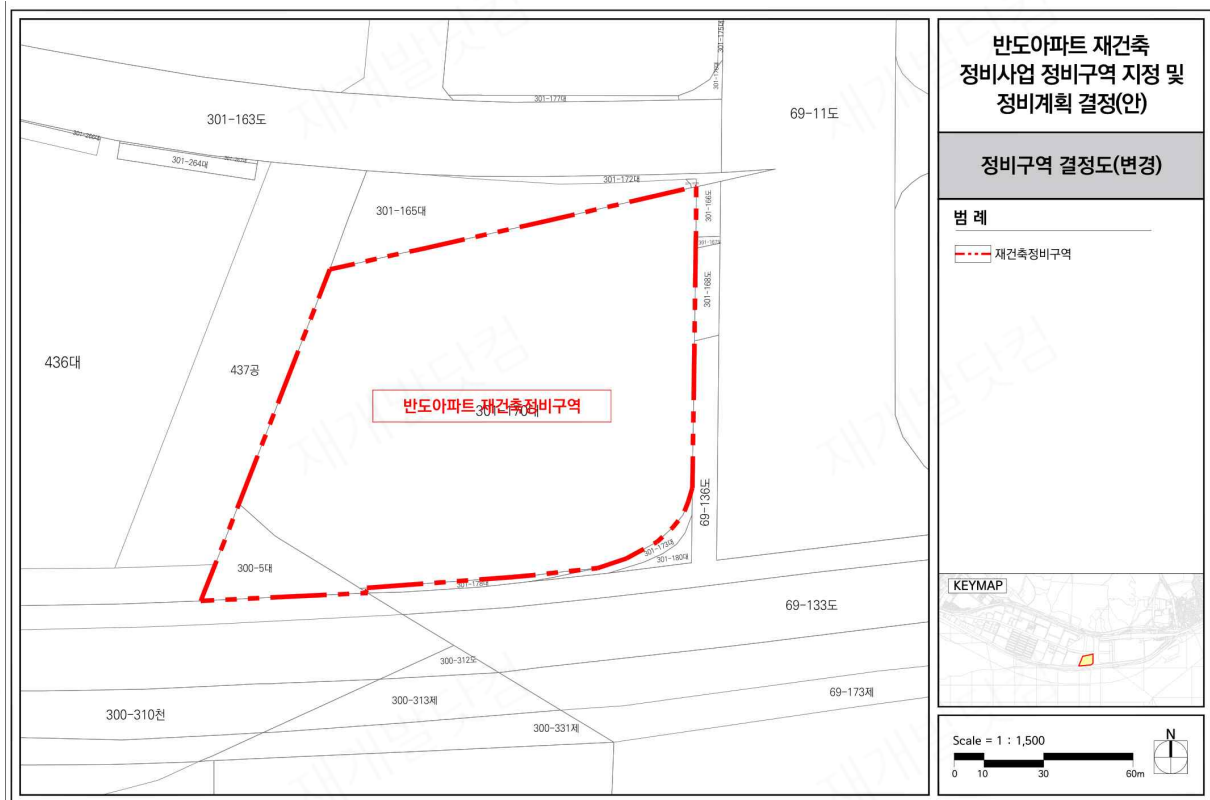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거지로서의 차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상1층 ~ 지상3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
	기타 외관요소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루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계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계획		단지내 차량동선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단지내 보행동선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
기타에 관한 사항		세부개발계획 수립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	-

10. 특별계획가능구역 관한 계획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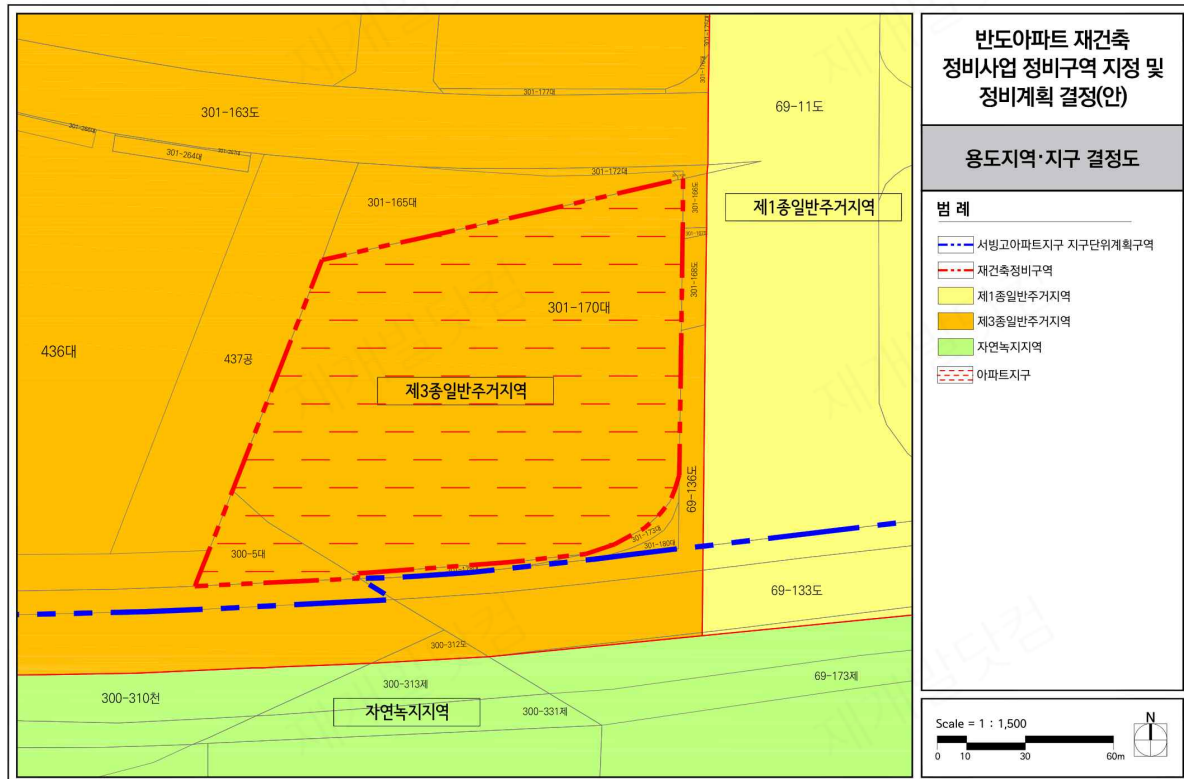
11. 리모델링 사업 추진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2. 기타에 관한 결정 사항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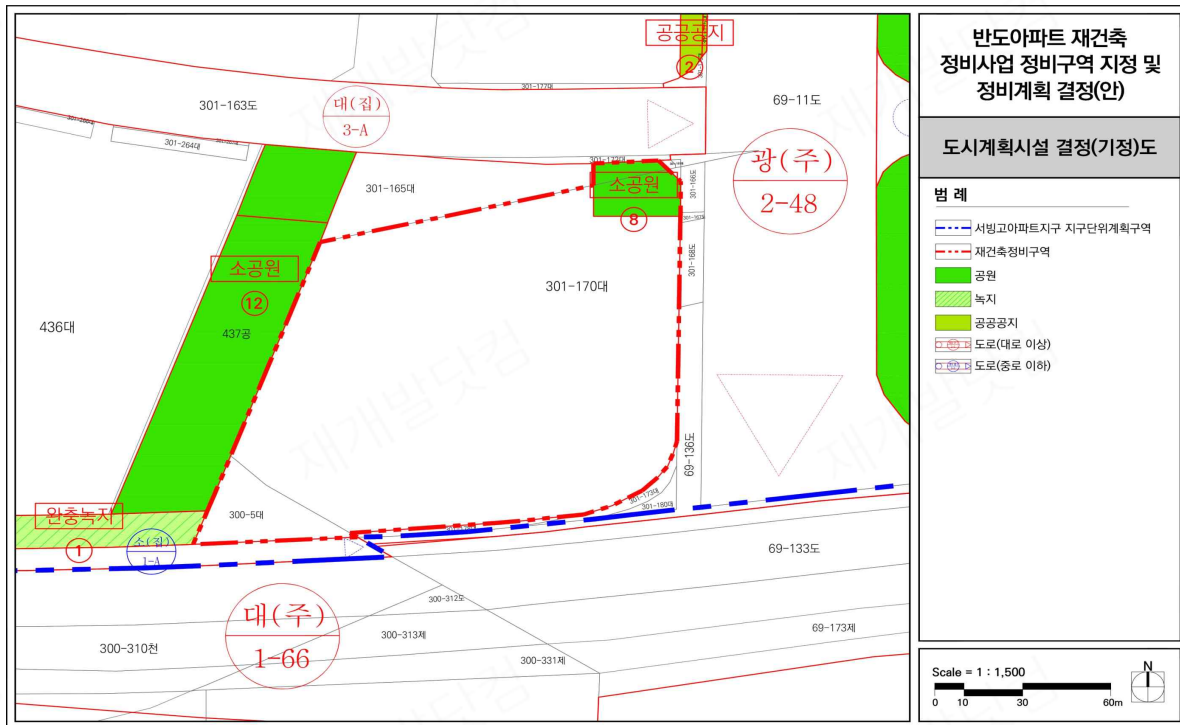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_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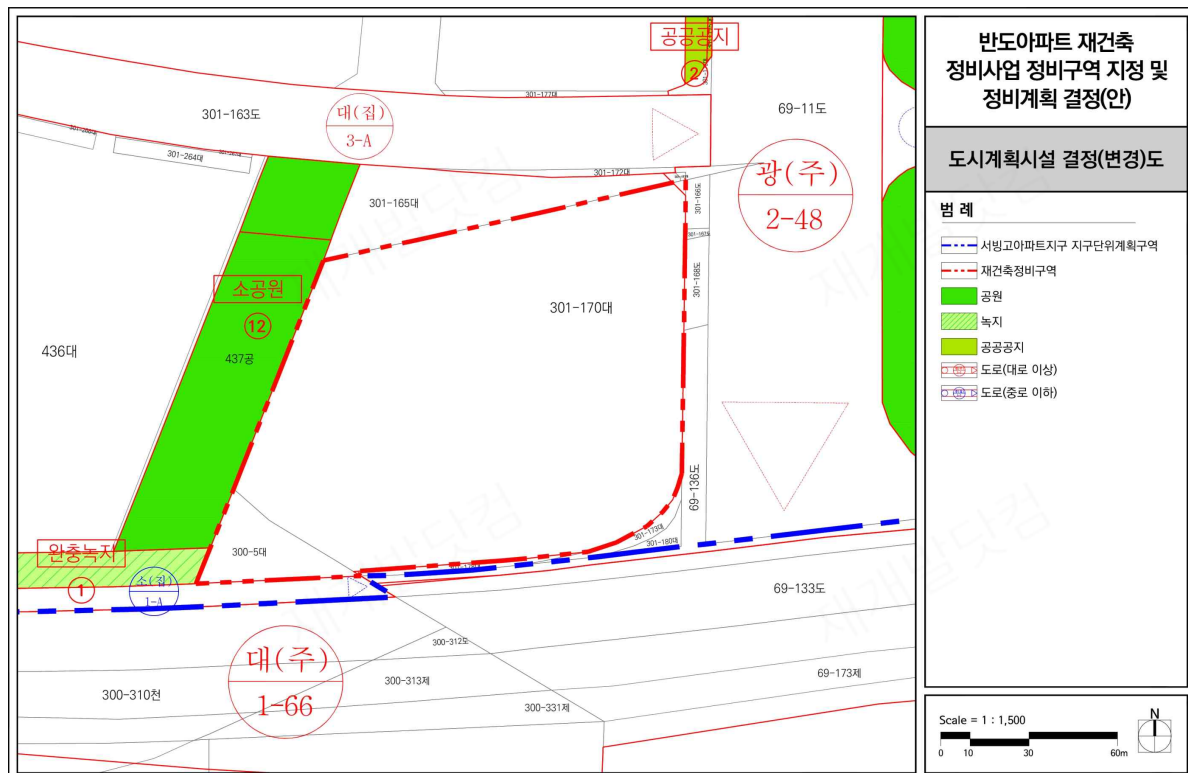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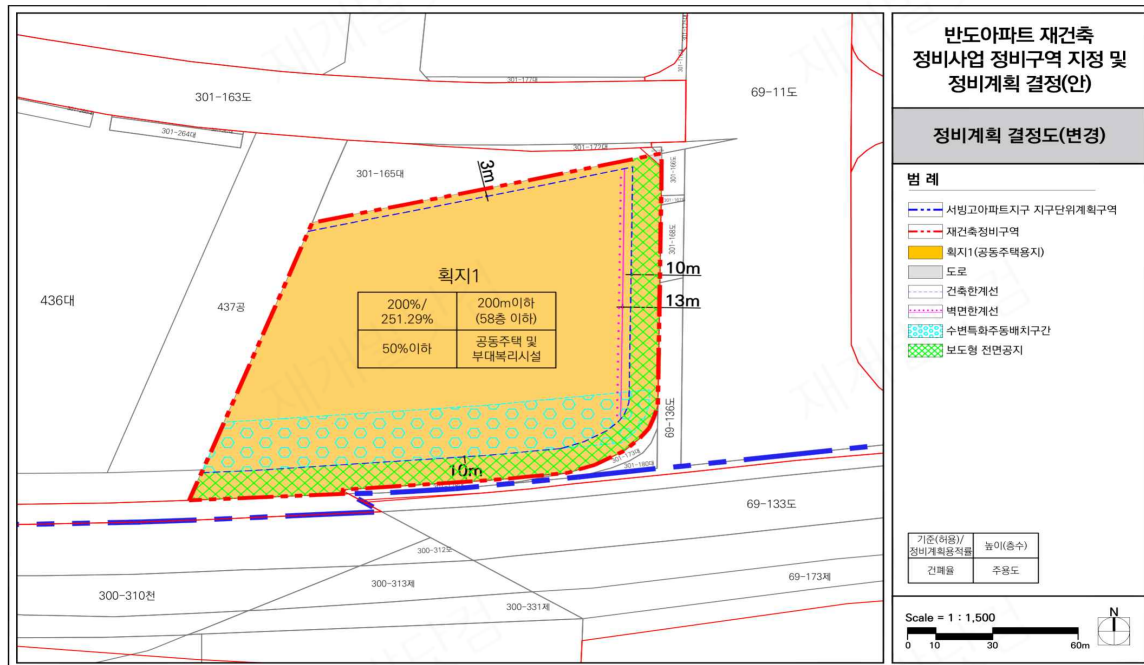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_기정]



[도시계획시설결정도_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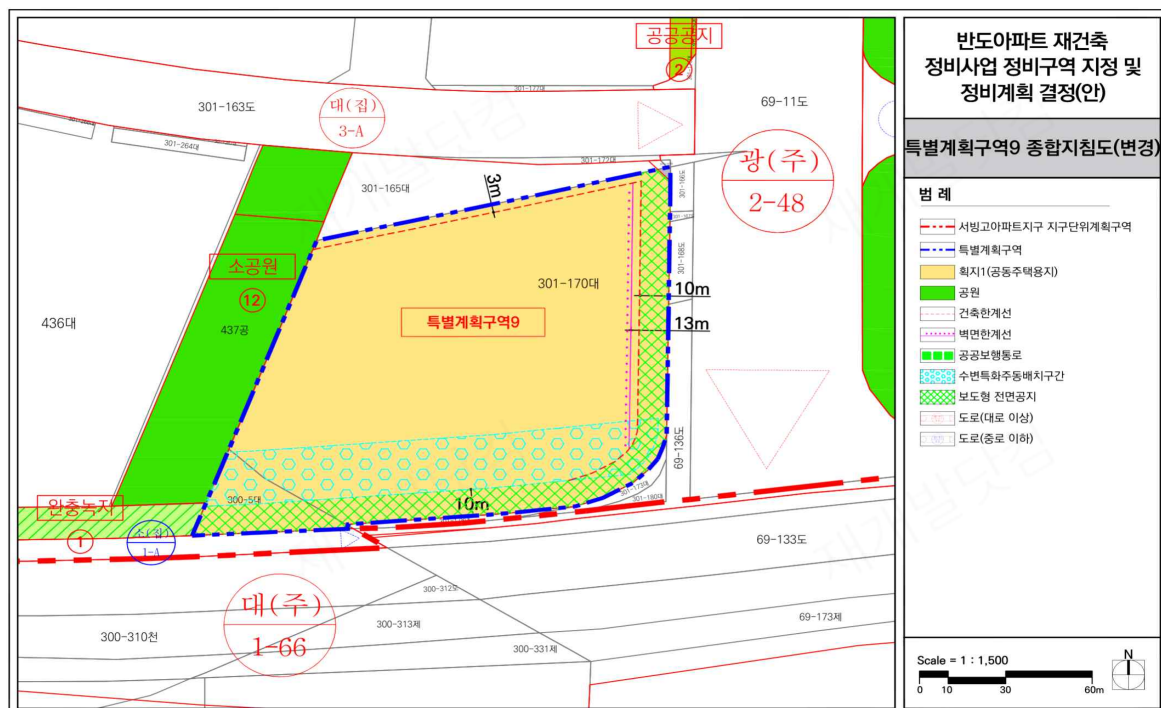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_변경]



<붙임 2>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9 종합지침도]



구 의 회

[예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규 제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26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 김 성 철 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소속구성원(이하 “소속구성원”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스톱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피해자의 보호 및 예방 조치
5.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
8. 그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

급자”라 한다)는 성희롱 등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충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소속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 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속구성원의 책무) 소속구성원(성희롱 등 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 등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 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 등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 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또는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의장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상담,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해 의회사무국에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장은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2명 이상으로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의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접수
2.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관련 사항
4.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7. 그밖에 의장이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성희롱 등 고충 처리 절차 및 지침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해당 의회의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의회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13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⑧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상담을 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히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의장은 성희롱 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 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2차 피해 상담과 고충 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 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성희롱 등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8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 ① 의장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연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

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구제 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방문객 등에 의한 성희롱 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밖에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의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 신청 등) ①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 상담·처리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14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 상담·처리 등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따른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조사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조사 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 등과 2차 피해 사항을 병합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진행 중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2차 피해의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의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충 상담·처리 등을 원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위촉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

⑧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통보 및 신고 의무) ① 의장은 해당 의회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의장과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의회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 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9. 그밖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③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고충 상담원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의장은 의회사무국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⑥ 의장은 의회사무국 내 스토킹 피해 및 위협의 정황을 파악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성희롱 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른 기관이나 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은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부위원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분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하며, 조사위원은 외부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으로 선임한다.

④ 위원은 소속구성원 및 성희롱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한다.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리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여부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밖에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사건 당사자와 관계(친인척, 직근 상급자 등)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사건 당사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을 때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이나 위원 본인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조사 및 심의 결과 통지) 의장은 당사자에게 제12조의 조사 결과, 제17조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 ① 의장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성희롱 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의장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 방지 대책에는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및 예방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또는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회 내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예방 교육 및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제정이유**

- 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
- 나. 추가적인 피해 (2차피해) 를 예방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
- 다. 신고·조사·조치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성을 강화

2. 주요내용

- 가.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구성원의 책무 규정
 - 안 제1조~제6조, 및 제13조~제14조
- 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7조 ~ 제9조
- 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11조~제12조, 안 제15조~제21조
- 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10조 및 제22조